

시행	안전관리과-4244 ( 2014.10.1. )
접수	토목부-19031 ( 2014.10.2. )
보존기간	년
결재일자	2014.10.1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수신자	토목부장

주무관	주무관	주무관	
정진혁	정달영	10/01 오반교	
협조			

## 건설공사장 기동불시점검 결과보고 [서빙고고가교 및 강변북로연결로 개선공사]

- 점검일시 : 2014. 10. 1(월)
- 점검결과
- ◆ 점검자 : 안전관리과 정달영, 정진혁

○ 흠막이붕괴 재해예방에 관한사항  
(현장시정사항)

- 현재 본 현장은 교각 기초시공을 위한 터파기 흠막이 가시설 설치 중으로 변형이 심한 H-Pile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반출요망
- 교각 기초를 위한 흠막이 가시설 중, 도로방호용으로 사용하여 염화칼슘 및 우수 영향을 받아 부식과 변형이 많은 부재인 H-pile을 엄지말뚝으로 시공중인 바, 주요부재는 강성이 우수하고 변형이 적은 자재 사용요망  
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5조(흠막이지보공의 재료)



○ 흠막이붕괴 재해예방에 관한사항  
(현장시정사항)

- 굴착이 완료되고 기초 철근배근 작업 중인 P1구간 사보강재에 설치된 계측기(변형률계) 선은 충격이나 우수의 영향으로 오작동하지 않도록 보호 조치요망

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7조(붕괴 등의 위험 방지) 2항



○ 중량물취급 안전에 관한사항  
(현장시정사항)

- 과적된 항공마대는 마대 용량에 90%이상이 안 되도록 분산 적재하여 반출요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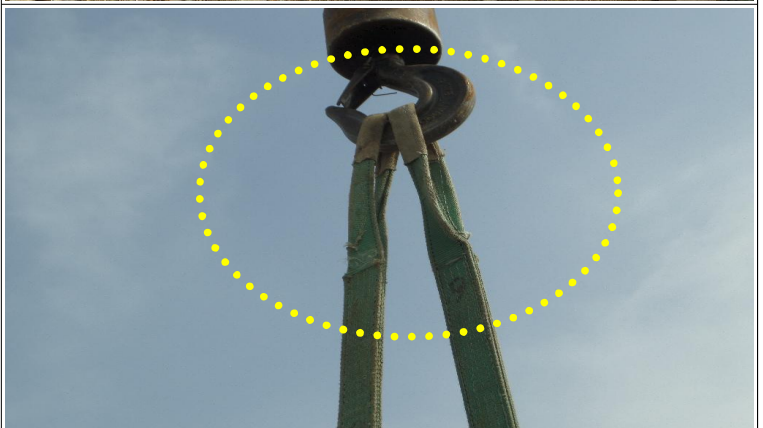
※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안전 기본지침 공통-37

- 철근 인양시 사용하는 슬링벨트는 하부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훼손이 없는 제품 사용요망

※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안전 기본지침 공통-45

- 산소나 가스통과 같이 운반시 중량이 편중되고 구를 수 있는 운반물을 운반구에 담아 운반할 경우에는 4지점으로 들어 전도의 위험이 적은 운반구를 사용해야하고 현장에서 임의로 제작한 운반구나 부식되거나 변형된 운반구는 사용 금지 요망

※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안전 기본지침 공통-38





○ 기계기구 안전에 관한사항  
(현장시정사항)

- 모든 위험 기계·기구류는 반입전 검사 및 정기검사(매월)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표기 또는 부착하여야 하나 본 현장에서 사용중인 절곡기에는 검사필증 및 점검표가 부착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용중인 기계·기구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조치요망

※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 
건설안전 기본지침 공통27, 35



○ 건설기계 안전에 관한사항  
(현장시정사항)

- 천공장비와 백호가 협소한 공간에서 동시 작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충돌, 협착 등의 사고위험이 있으므로 지정된 신호수를 배치요망

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2조(접촉의 방지), 제200조(접촉방지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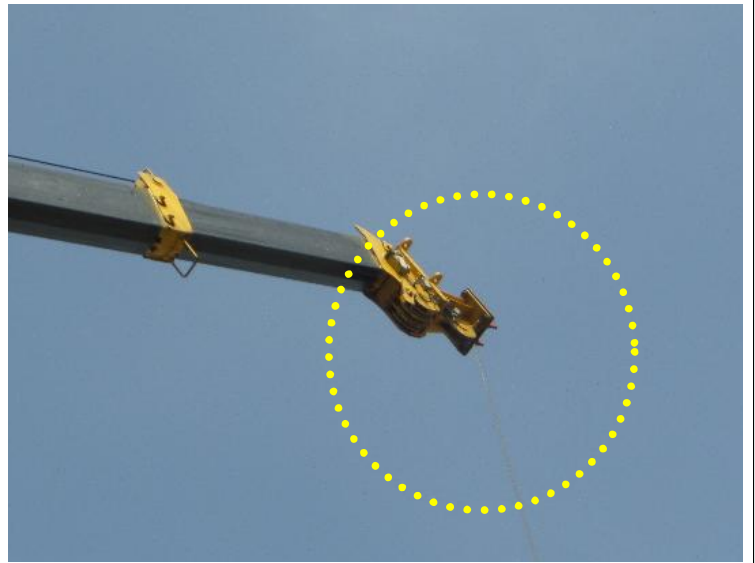
○ 건설기계 안전에 관한 사항  
(현장시정사항)

- P1 기초 철근조립중으로 25톤 카고 크레인을 이용 철근 인양중
- 카고크레인의 권과방지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설치하여 사용하고 장비작업자 교육 요망.

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p22

- 카고 크레인은 인양시 전도위험을 막기 위해 바뀌는 지상에서 띄우고 아웃트리거에 의한 지지 요망

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p41



○ 기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
(현장시정사항)

- 현장사무소로 사용중인 컨테이너 3개소에서 지반단차로 인하여 목재로 받쳐 놓은 컨테이너 중에 받침목재의 상태가 좋지 않고 양단에만 받침이 되어 있는 가운데 컨테이너는 전도 및 미끄럼 방지를 위한 보강요망
- 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(전도의 방지)





○ 기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
(현장시정사항)

- 현장 주변이 통행량이 많은 도로와 주거 및 상업지구 인근으로 사토된 토사를 적치할 경우 비산되지 않도록 포장관리 철저 요망
- 적치된 토사를 장기간 방치할 경우 우기시 유실되거나 침식되지 않도록 주변에 배수용 토사측구 개설요망
- 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0조(지반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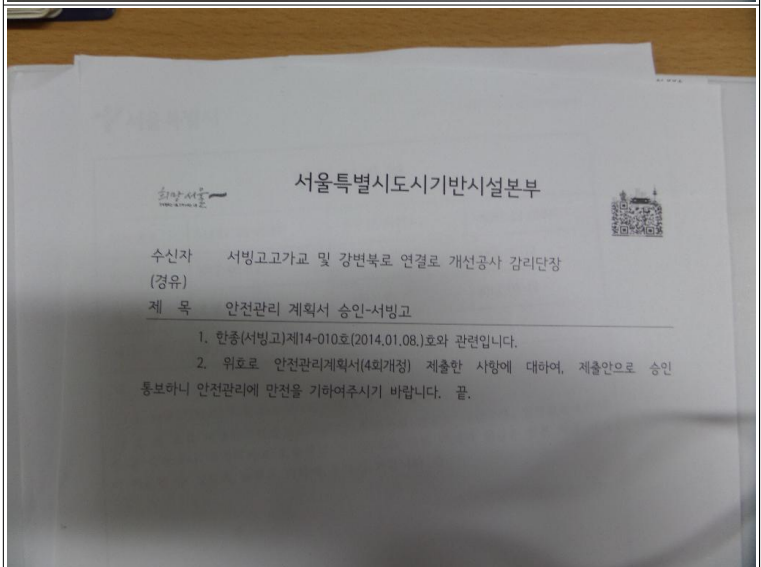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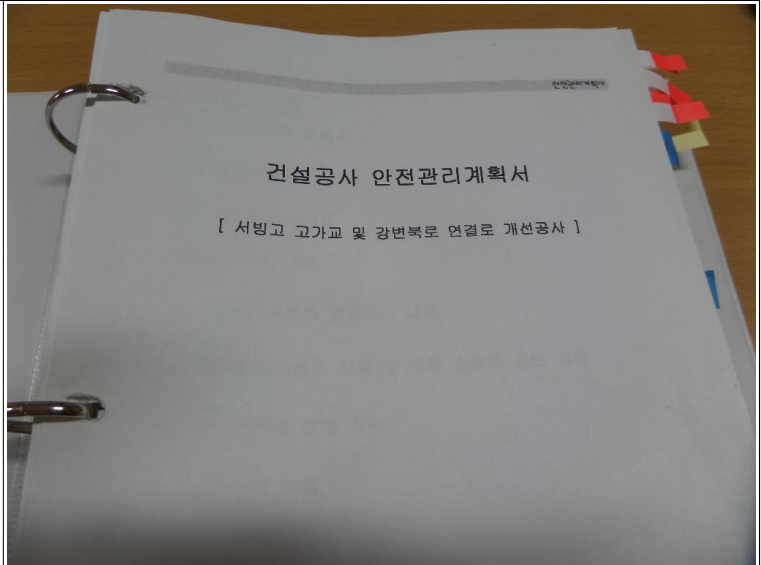
○ 기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
(현장시정사항)

- 별도의 세륜세차시설 없이 살수차에 의존하여 차량의 비산먼지를 관리하는 현장여건상 공사용 가도에 물고임이 발생할 경우 흙탕물이나 진흙이 공사용 차량 출차시 도로에 비산먼지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주행성 확보 및 비산먼지 방지를 위하여 우천 후 가도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조치 요망
- 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9조(가설도로)



○ 기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
(검토사항)

- 안전관리계획서를 '14.01.09일로 승인받았고, 설계설명회 시행지침('14.09.04)에 의해 안전관리계획서를 수정 보완중으로 설계설명회 시행지침에 첨부된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지침에 의거 수정보완하기 바랍.



- 조치사항 :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전·후 사진을 첨부하여 부서장 보고 후 2014.10.8(수)까지 안전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끝.